

청주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가합14595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1. 18 선고 2022나50728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가합14595 판결

###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지영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변론종결 2022. 4. 27.

판결선고 2022. 6. 8.

###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서 2016. 9. 1.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3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서 2017. 10. 31.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2억 3,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통신장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채무자 회사는 주식회사 D이 제공하는 VAN 서비스<sup>1)</sup>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을 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E이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

1) 원고는 2014. 4.경 E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채무자 회사와 E은 2014. 4. 11. 원고에게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채무자 회사, 차용금 3억 5,000만 원, 변제기 2017. 4. 10. 이자 월

2.3%,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기재한 금전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2) E은 2016. 5.경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7. 21. E 및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채무자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2017. 12. 21. 본소를 인용하고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1985(본소), 2017가합200501(반소)], 채무자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12. 1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나2142], 재차 채무자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2019. 4. 5.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00065).

다. 채무자 회사와 피고 사이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① 채무자 회사와 E은 2016. 9. 1. 피고에게 채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모든 영업권, 자산 일체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계약 내용에서는 채무자 회사 및 E을 “甲”, 피고를 “乙”로 본다).

#### 제1조 [양도목적물]

甲 이 乙 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 ① 甲 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모든 영업권(영업권 거래처 및 거래처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 일체)
- ② 甲 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거래처에 공급된 자산 일체
- ③ 甲 이 소유하고 있는 VAN 본사, F회사 및 가맹점과의 권리 및 계약서

#### 제2조 [양도 양수 대금]

양도·양수 대금은 별첨계약의 영업권 및 사업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1차

합의한 금액으로 하며, 최종 양도·양수 금액은 2017. 9. 30.자 영업권 및 사업권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단 2차 영업권 산정시 수익이 없는 영업권은 제외하여 산정한다(예, 프로젝트 현금전환 등).

### 제3조 [대금지불방법]

- ①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의 계약체결 및 D, F회사와의 영업권 계약이전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한다.
- ②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총액은 일금 일억이천만원( ₩ 120,000,000세 포함)으로 하며, 대금은 계약일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③ 채무자 회사는 영업권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보증증권설정료 등)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부담해야 할 제비용을 관계회사에 대신 선지급하고, 계약금 총액에서 공제한 후 계약금을 지급한다.
- ④ 중도금 총액은 일금 일억팔천만원( ₩ 180,000,000세포함)으로 하며 대금은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 ⑤ 잔금은 2017년 9월 30일에 재평가한 금액 중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익월 31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잔금 지급시 추가 미정산된 부분이 발생시 상호 협의후 지급한다.
- ②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에 첨부된 별첨계약에는 2016. 8. 31. 기준으로 산정된 영업권 산정금액은 679,383,000원, 공제내역 합계 252,219,936원, 양도양수가격은 427,000,000원(10만 단위 절사)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영업권 양도양수 최종계약 체결

채무자 회사와 E은 2017. 10. 31. 피고와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에 따라 최종정산을 마치는 내용의 ‘영업권 양도 · 양수 최종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종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양도대금을 2억 3,9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계약금 1억 2,000만 원 및 잔금 1억 1,900만 원의 지급을 확인하며, 초과 지급된 7,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2).

###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소송의 제1심판결은 2017. 12. 21. 선고되었다. 위 관련소송에서 채무자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었다. 관련소송은 2019. 4. 10.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6. 9. 1.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 2) 구체적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원고가 2014. 4.경 E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회사가 위 E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관련소송의 경과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영업권을 양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양도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 2)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채무자 회사는 2016. 9. 1. 기준 67,976,85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7. 5. 18.경에는 17,823,000원의 지방세를, 2017. 10. 11.경에는 7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현재까지 채무자 회사는 ‘휴면’ 상태로 등기되어 있다.
- ② 채무자 회사는 2013. 12. 28. G에게 1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③ 피고의 변경전상호는 ‘(주)H’이었는데, 2007. 6.경 설립된 이후로 2013. 10.경까지 채무자 회사와 같은 사무실인 청주시 흥덕구 1빌딩 3층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2013. 10.경 이후로는 그 바로 아래층인 위 1빌딩 2층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 ④ 피고의 대표이사 J는 2003.경부터 2007. 8. 29.까지 채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위

기간 중에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기간도 있다.

### 3) 이 사건에서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은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영업권 및 영업재산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무자 회사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추정을 반복하기 어렵다.

① 채무자 회사는 2016. 9. 1. 기준 67,976,85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외에도 G에 대한 10억 원의 대여금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의 목적이 된 영업권 및 영업재산이 전부이었는데, 피고나 채무자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권 등의 평가액보다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가 더 많아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② 피고와 채무자 회사는 영업장소가 같거나 인근에 위치하여 있었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자산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일인 2016. 9. 1.로부터 5일 내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2016. 12. 31.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 이전인 2016. 4. 11. 2,000만 원을, 2016. 8. 23. 1,000만 원을, 2016. 8. 30.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④ 관련소송 제1심 소송에서, 채무자 회사와 E은 2016. 5.경 이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억 9,527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위 관련소송 제1심은 채무자 회사와 E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히 변제하였다는 위 4억 9,527만 원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한 2014. 4. 11.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위 변제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소송 제1심의 판단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었다. 즉 채무자 회사가 관련소송에서 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주장은 그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인용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회사 또는 E은 이 사건 대여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 가. 관련법리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 1)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②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의 목적인 영업과 영업재산은 채무자 회사가 주식회사 D이 제공하는 VAN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모집·유지·관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규 또는 이탈하는 가맹점이 발생하고, 그에 기하여 새로운 채권·채무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청주세무서에 대한 국세채권추심액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 이후 영업권과 영업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 회사에

회복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액배상은 ①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③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은 3억 5,000만 원이고,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에 의하면 영업권 산정 합계금액은 약 6억 7,938만 원이며, 채무자 회사는 VAN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 모집·유지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영업권의 가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유사하거나 적어도 피보전채권액 이상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최종계약에는 양도양수대금이 2억 3,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별첨계약의 최종산정내역을 살펴보면 ‘VAN 승인 수수료’ 및 ‘CMS 총금액(월)’의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수(영업권)’를 비롯하여 그 외 항목의 금액은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위 2억 3,900만 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은 위 3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전보람, 판사 서영민

1)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를 중개하여 신용카드의 거래승인, 카드전표 매입, 청구 대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최종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최종계약은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가액을 정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과 이 사건 최종계약 사이에는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다. 한편 이 사건 최종계약과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최종계약은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이 사건 최종계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